

[서식 예] 답변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공제의 항변 2)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 임대차보증금반환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피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원고의 부당이득의 공제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밀리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만료 이후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별도로 차임이나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법률상원인없이 차임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피고에게 그 만큼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차임상당액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30만원/월×10개월=300만원)만을 공제하더라도 더 이상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건물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